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의안 번호	659
----------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19. 6.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I.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sup>1)</sup>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가 2019년 5월23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 II.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1.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조 8,139억원 대비 8.0%, 2조 8,656억원을 증액한 38조 6,796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표 2-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당초예산	간주처리				
	①=②+③	②	④	⑤=④-①	⑤/①	
총 계 규 모	35,813,918	35,741,608	72,309	38,679,610	2,865,692	8.0
일 반 회 계	24,198,199	24,168,334	29,864	26,815,641	2,617,442	10.8
특 별 회 계	11,615,719	11,573,274	42,445	11,863,969	248,250	2.1

○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2조 6,174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①'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제잉여금 2조 1,419억 1,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요청하고, ②지방소비세 4%p(11%→15%) 인상분 4,354억 7,400만원, ③국고보조금 등 1,357억 1,000만원, ④지방교부세중 분권교부세 245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⑤지방교부세중 소방안전교부세 △59억 4,400만원, ⑥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142억 6,9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는 2,48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 요청한 것임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35조 8,139억원 1,800만원)보다 8.0%, 2조 8,656억 9,200만원 증액편성 요청된 것임
  - **일반회계**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지원(△309억 4,500만원) 등 39개 세부사업에 대해 △1,264억 2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하고, 감채기금 적립(6,182억 6,900만원) 등 324개 세부사업에 대해 2조 7,438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금번 추경을 통해 2조 6,174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1개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36개 세부사업 △3,892억 9,8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182개 세부사업 6,375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자 금번 추경을 통해 2,48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2.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 **성인지 예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하고, **성과계획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됨

###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1) 지난해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

- 지난 '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2조 3,959억 7,0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378억 2,700만원)과 이월액(2,162억 3,200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1,419억 1,000만원이 발생되었음
-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 의무경비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2조 1,419억 1,000만원)중 ①시세 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③타 회계전출 등 이른바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정산하기 위해 지난 '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2조 1,419억 1,0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목중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세입처리 하고자 편성요청한 것임

## 2) 지방세 수입(지방소비세 4%p 인상분)에 대한 세입처리

- 지난 '18년 10월, 지방의 재정부담 및 기능이양 등을 감안하여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9년도 15%(+4%p), '20년도 21%(+6%p)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부처가 합동 발표한 이른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 '18년 12월 31일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방세수입중 기편성된 지방소비세 세입예산에 대해 4%p 인상분 4,354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 3)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경안중 세입예산에 조정요청된 **국고보조금** 등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당초 내시된 교부액이 증·감 변경통보 됨에 따라 국비를 증·감 조정 요청한 것임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4조 3,798억 6,700만원)보다 1,357억 1,000만원 증액된 4조 5,155억 7,7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4조 1,052억 100만원)보다 1,23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 한 것으로서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472억 7,000만원), **아동수당 지원**(국비 263억 1,1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미지급금 관리**(국비 114억 8,100만원), **전기차 보급**(국비 222억 4,500만원)등의 55개 사업(1,676억 4,400만원)에 대해 증액편성을 요청하고,
    - **자활근로사업 지원**(△209억 6,400만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109억 8,400만원) 등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A〉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세입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 등	4,379,867	135,710	4,515,577	
국 고 보 조 금	4,105,201	123,288	4,228,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47,270</li> <li>◦아동수당 지원 26,311</li> <li>◦전기차 보급 22,245</li> <li>◦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11,255</li> <li>◦장애인활동지원 사업-미지급금 관리 11,481</li> <li>◦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9,115</li> <li>◦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7,174</li> <li>◦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6,000</li> <li>◦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4,500</li> <li>◦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051</li> <li>◦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2,348</li> <li>◦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55</li> <li>◦중증장애인연금 2,187</li> <li>◦긴급복지지원사업 2,000</li> <li>◦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818</li> <li>◦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007</li> <li>◦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990</li> <li>◦용미리 자연장지 조성 755</li> <li>◦가정양육수당 지원 654</li> <li>◦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77</li> <li>◦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472</li> <li>◦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87</li> <li>◦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335</li> <li>◦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300</li> <li>◦(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280</li> <li>◦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250</li> <li>◦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184</li> <li>◦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146</li> <li>◦(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126</li> <li>◦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12</li> <li>◦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108</li> <li>◦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03</li> <li>◦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지원 100</li> <li>◦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100</li> <li>◦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91</li> <li>◦노숙인재활·요양시설기능보강 67</li> <li>◦청년센터 운영지원(직접) 60</li> <li>◦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62</li> </ul>

〈표 3-1B〉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세입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 고 보 조 금	4,105,201	123,288	4,228,489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56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바른식생활교육지원 50
				◦청년희망키움통장 40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7
				◦통합 방문건강관리 36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32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32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자본보조 30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27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자본) 27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 26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 지원 22
				◦성인권 교육 지원 1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9
				◦취약위기가족지원 7
				◦축산물 수거검사-축산식품안전관리 경상경비자차단체 감시원 운영 2
				◦자활근로사업 지원 △20,964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10,98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125
				◦자활장려금 △1,776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1,11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42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00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189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28
				◦라이스랩 운영 △100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 △83
				◦먹는물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 △80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0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 △4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40				
◦환경분야시험검사정도관리시스템강화 △27				
◦희망키움통장Ⅱ △16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10				
◦주요감염병표본감시 △2				

○ 아울러 국고보조금등에 포함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고자 95억 3,6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 요청하고,

- **기금**의 경우에도 30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고자 28억 8,600 만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증·감에 따른 세입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 조 금	61,504	9,536	71,04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3,67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4,039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785
				◦지역공동체 일자리 1,008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4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815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192

〈표 3-3〉 기금 증·감에 따른 세입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기 금	213,160	2,886	216,046	난임부부 지원 2,451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 346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실시 322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37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3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0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0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08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92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8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46
				문화재 돌봄 43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3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34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역량 강화사업 20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2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지원 14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8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4
				응급의료기관 지원 △602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402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119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02
				병원감염관리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81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19
				청소년지원센터지원(꿈드림운영) △4

#### 4)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고 있으나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
  
- 금번 추경안은 회계연도중 보통교부세 245억 6,200만원을 증액교부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59억 4,400만원이 감액통보됨에 따라 일반회계중 지방교부세 수입을 기정예산(1,754억 9,300만원)보다 186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1,400억 4,300만원)보다 245억 6,2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19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당초 내시보다 증액된 1,489억 3,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를 변경통보 하고, '18회계연도 정산분(156억 6,900만원)도 교부함에 따라 추경을 통하여 보통교부세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19년도 예산서중 예산총칙에 회계연도 중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계연도 개시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를 간주처리 하여 세입조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정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등과 같이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 **소방안전교부세**는 기정예산(330억원)보다 △59억 4,400만원 감액 조정 요청한 바 '19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270억 5,500만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편성 된 세입예산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5)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중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기정예산(1조 4,798억 900만원)보다 △1,142억 6,900만원 감액조정 요청한 바
- 기정예산의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서울의료원 매각수입)으로 5,14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서울시가 '19년 1월, 8만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의료원 매각대상 면적중 일부를 공공주택 8만호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바
  - 당초 매각면적( $31,543m^2$ )중 8만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감소된 면적( $7,000m^2$ ) 만큼 당초 편성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중 △1,142억 6,900만원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4〉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일 반 회 계	24,198,198	2,617,442	26,815,641	
지 방 세 수 입	17,785,836	435,474	18,221,310	
지 방 소 비 세	1,359,199	435,474	1,794,673	◦ 「지방세법」 개정('18.12)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4%p 인상 (11%→15%) 435,474
세 외 수 입	1,479,809	△114,269	1,365,539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87,255	△114,269	472,985	◦ 서울의료원 매각수입 △114,269 - 임대주택 8만호 사업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매각면적 감소분(△7,000㎡)반영
지 방 교 부 세	175,493	18,617	194,110	
보 통 교 부 세 (분 권 교 부 세)	140,043	24,562	164,605	◦ 분권교부세 추가분 24,562 - '19년도 확정내시 8,893 - '18회계연도 정산분 15,669
소방안전교부세	33,000	△5,944	27,055	◦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내시 △5,944
국고보조금 등	4,379,867	135,710	4,515,577	
국 고 보 조 금	4,105,201	123,288	4,228,489	◦ 회계연도중 증·감교부 123,28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1,504	9,536	71,041	◦ 회계연도중 증·감교부 9,536
기 금	213,160	2,886	216,046	◦ 정부 기금사업 증·감 교부 2,886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377,192	2,141,910	2,519,102	
순세계잉여금	-	2,141,910	2,141,910	◦ '18회계연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 2,141,910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

자료근거 :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11조 6,157억 1,900만원)보다 2.1%, 2,482억 5,000만원 증액된 11조 8,639억 6,9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5A〉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공기업특별회계	1,846,784	31,540	1,878,324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11,784	31,540	1,043,324	◦ 순세계잉여금 31,540
기타특별회계	9,768,935	216,709	9,985,644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1,196,642	△145,645	1,050,996	◦ 지하철 공기질 개선 7,355 ◦ 순세계잉여금 2,135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sup>주1)</sup> 14,038 ◦ 감채기금 전입금 △169,175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446,024	3,476	1,449,500	◦ 일반부담금 <sup>주2)</sup> △6,440 ◦ 특별교부세 200 ◦ 국고보조금 75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0 ◦ 순세계잉여금 <sup>주3)</sup> 74,984 ◦ 기타회계(일반)전입금 44,291 ◦ 기타회계(계정간)전입금 △442 ◦ 법정(재산세도시지역분)전입금 3,556 ◦ 예탁금 및 예수금 <sup>주4)</sup> △113,780

〈표 3-5B〉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64,685	△32,540	232,144	◦일반부담금 <sup>주5)</sup> △6,780 ◦지방채 수입 <sup>주6)</sup> △42,850 ◦순세계잉여금 △7,382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전입금 24,472
주택사업 특별회계	2,347,759	31,603	2,379,363	◦국고보조금(기금) <sup>주7)</sup> 7,560 ◦순세계잉여금 <sup>주8)</sup> △172,069 ◦기타회계전입금 <sup>주9)</sup> 178,61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sup>주10)</sup> 17,500
도시개발 특별회계	2,381,671	39,182	2,420,854	◦국고보조금 <sup>주11)</sup> 5,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sup>주12)</sup> 1,000 ◦지방채 수입 (풍납토성) 19,900 ◦지방채 수입 (모집공채) <sup>주13)</sup> △39,519 ◦순세계잉여금 △26,869 ◦기타회계전입금 <sup>주14)</sup> 79,670
균형발전 특별회계	-	109,019	109,019	◦국고보조금 <sup>주15)</sup> 8,12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sup>주16)</sup> 1,007 ◦지방채 수입 (모집공채) 39,519 ◦일반회계전입 60,368
소방안전 특별회계	845,556	15,628	861,184	◦국고보조금 3,024 ◦순세계잉여금 9,825 ◦기타회계 전입금 <sup>주17)</sup> 2,77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55,869	195,987	1,451,856	◦국고보조금 52,993 ◦기타회계전입금 142,993

주1) 9호선 3단계 건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8억 8,500만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억 5,300만원

주2)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부담금) 10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교통개선부담금) △74억 4,000만원

주3) 교통관리계정 순세계잉여금 848억 1,200만원, 교통개선계정 순세계잉여금 △140억 5,000만원, 주차장관리계정 순세계잉여금 △23억 2,900만원. 교통방송계정 순세계잉여금 65억 5,200만원

- 주4)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교통관리계정) △1,249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교통개선분담금계정) 111억 2,000만원
- 주5)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7억 8,000만원
- 주6)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모집공채) △428억 5,000만원
- 주7)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75억 6,000만원
- 주8) '18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국민계정) △598억 4,800만원. '18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도정계정) △957억 6,000만원, '18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재촉계정) △164억 6,000만원
- 주9) 일반회계전입금(국민계정) 730억원, 일반회계전입금(도정계정) 985억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 71억 1,300만원 (주거환경정비계정 35억 5,600만원, 재정비축진계정 35억 5,600만원)
- 주1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75억원
- 주11) 풍납토성 복원 50억원
- 주12) 암사역사공원 조성 10억원
- 주13) 서서울미술관 건립 △13억 1,100만원,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0억 9,700만원,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2억 9,500만원,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억 3,800만원,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233억 7,800만원
- 주14) 법정전입금(재산세 도시지역분 70%) 248억 9,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47억 7,400만원
- 주1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1억 2,500만원
- 주16)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1억 9,2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8억 1,500만원
- 주17)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130억 8,1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44억 5,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8억 4,400만원

## 1)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경정

-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인 바
-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315억 4,000만원)에 대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편성 요청한 것이고,

〈표 3-6〉 순세계잉여금 처리 현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18 회 계 연 도 결 산 결 과 순 세 계 잉 여 금 ①	추 증 경 · 청 ②	안 감 액	추 잔 경 ①-②	후 액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540	31,540			0

※ 자료근거 : '18회계연도 결산서 및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기타특별회계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9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회계가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을 경정요청한 바,
- **교통사업특별회계(749억 8,400만원), 소방안전특별회계(98억 2,5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21억 3,500만원)**는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요청하고,

- 주택사업특별회계(△1,720억 7,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268억 6,9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73억 8,2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7〉 순세계잉여금 처리 현황(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9년도 예산 기반영액	추경· 안감 요청 액	추경 후 액 ①-(②+③)
	①	②	③	①-(②+③)
주택사업특별회계	54,622	226,692	△172,070	0
도시개발특별회계	58,363	85,232	△26,869	0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2,609	39,992	△7,382	0
교통사업특별회계	113,986	39,002	74,984	0
소방안전특별회계	12,645	2,820	9,825	0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2,415	2,118	0	29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98	2,091	0	607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2,135	0	2,135	0

※ 자료근거 : '18회계연도 결산서 및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며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경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가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될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는 사례가 있음
- 「지방회계법시행령」은 결산상잉여금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서
  -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회신하였음
- 그러나 특별회계의 경우, 서울시가 '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실제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보다 115.1%나 초과하여 '19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바
  - 이미 지난 '18년도 제1회 추경안 및 '19년도 예산안 심사시 검토보고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재정여건이라 할지라도 법령의 입법취지와는 다른 적용 사례일 수 있어 법령개정을 건의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관행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한 바 있음에도 유사 편성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중앙정부와 타 시·도가 관련법을 편의적으로 적용하여 당해 회계연

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에 대해 결산으로 규모를 확정하기 이전이라도 차년도 본예산에 이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은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

-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경정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중앙정부가 당초 내시액을 증·감 변경통보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
  
- **국고보조금**의 경우, 6개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증액편성을 요청한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국비 73억 5,500만원이 증액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667억 4,1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73억 5,5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국비 7억 5,600만원이 증액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236억 8,6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7억 5,6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풍납토성 복원(국고보조금)**으로 국비 50억원이 증액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714억 3,6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50억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회계이관 등을 사유로 세입예산을 81억 2,5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에 국비 529억 9,300만원이 증액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6,255억 7,8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529억 9,3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소방안전특별회계는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에 국비 30억 2,400만원이 증액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38억 4,2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30억 2,4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8〉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6,741	7,355	74,096	◦ 지하철 공기질 개선 7,355
교통사업특별회계	23,686	756	24,443	◦ 장애인콜택시 운영 756
도시개발특별회계	71,436	5,000	76,436	◦ 풍납토성 복원(국고보조금) 5,000
균형발전특별회계	-	8,125	8,125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12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578	52,993	678,571	◦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52,993
소방안전특별회계	3,842	3,024	6,866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3,024

○ 넓은 의미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경우,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증 3억 5,000만원)와 회전교차로 설치(증 1억 4,000만원)는 증액 통보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감액(△1억 4,000만원)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69억 8,700만원)보다 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증액(10억원)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112억 2,1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10억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중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증 1억 9,200만원)과 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증 8억 1,500만원)이 증액 통보됨에 따라 10억 7,0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교통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987	350	7,3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350</li> <li>◦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40</li> <li>◦ 회전 교차로 설치 140</li> </ul>
도시개발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221	1,000	12,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사역사공원 조성 1,000</li> </ul>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007	1,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192</li> <li>◦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815</li> </ul>

- 정부가 교부하는 기금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 증액(75억 6,000만원)통보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75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0〉 기금에 대한 세입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주택사업특별회계	기금	500,566	7,560	508,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가구 매입임대 (정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7,560</li> </ul>

### 3) 회계간 전입에 따른 세입편성

-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외에 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을 구성하고 있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회계간 전입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정요청하고 있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474억 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 등을 추가 편성하고자 일반회계로부터 442억 9,100만원을 전입하고,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1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동 특별회계의 주차장관리계정으로 전입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5,6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동 특별회계는 계정간 전·출입을 통해 재원을 조정 하고자 기편성된 주차장관리계정 전입금(기정예산 1,724억 200만원) 중 △4억 4,2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11〉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기타회계전입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역	기 정 예 산	증 감	추 경 ( 안 )	비 고
계	701,574	47,405	748,979	
일반회계전입금 (버스재정지원 등)	20,000	44,291	64,291	-
법 정 전 입 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140,309	3,556	143,865	'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355억 6,500만원)의 증수액 10% (주차관리계정)
주차장관리계정 전 입 금	172,402	△442	171,960	'18년도 기편성 예산 감액조정
택시·화물·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333,113	-	333,113	-
일반회계전입금	35,749	-	35,749	-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796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법정전입금(재산세 도시지역분)은 '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를 동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사항으로 '18회계연도 결산분 248억 9,500만원을 전입하고,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47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1,429억 9,3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국비가 확정내시 되고, '18회계연도 부족 편성분 반영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로부터 해당 특별회계로 추가 전출이 필요한 바,
  - ①의료급여사업 매칭시비 476억 8,000만원, ②의료급여관리사 지원 매칭시비 1억 1,300만원, ③의료급여사업에 대한 '18년도 시비부족 편성분 900억원, ④정부추경에 따른 편성분 52억원 등 1,429억 9,300만원을 세입과목중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부터 전출된 재원을 기타회계전입금(244억 7,200만원)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27억 7,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①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130억 8,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②'19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확정내시액 △44억 5,8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함에 따라 ③기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중 일부를 감액 조정하기 위해 △58억 4,4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12〉 소방안전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역	기 정 예 산	증 감	추 경 ( 안 )	비 고
계	832,269	2,778	835,047	
지역자원시설세	284,467	13,081	297,548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소방안전교부세	24,750	△4,458	20,292	'19년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내시 에 따른 감액조정
일반회계전입금	523,052	△5,844	517,207	'19년도 기편성 예산 감액조정

※ 백만원 미만 절사

#### 4)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세입경정

- 지난 '18년 12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중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음
  - 동 조례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되어야 하나 조례 시행일('19. 1. 3)로 인하여 '19년도 본예산 편성시 해당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못한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라 타 회계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을 감액하여 동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90억 1,900만원으로 균형발전사업 회계이관에 따라 **전입금**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603억 6,800만원이 전입되고, **지방채**는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233억 7,800만원을 포함한 모집공채 5건, 395억 1,900만원, **보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1억 2,500만원이 포함된 91억 3,200만원을 동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3〉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균형발전특별회계	0	109,019	109,019	
보 조 금	0	9,132	9,132	
국 고 보 조 금	0	8,125	8,12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12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1,007	1,007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192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815
지 방 채	0	39,519	39,519	
모 집 공 채	0	39,519	39,519	◦서서울미술관 건립 1,311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097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295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38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23,37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0	60,368	60,368	
기타회계전입금	0	60,368	60,368	◦일반회계 전입금 60,368



##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 1.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편성 특징

#### 1)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법정경비 등의 정산

- 「지방회계법」은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면 법정 정산 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제잉여금이 발생될 경우,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③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에 대한 정산, ④지역자원시설세중 특정 부동산 증수분에 대한 정산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산하였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제잉여금(2조 1,419억 1,000만원)에 대해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5,401억 2,4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2,999억 100만원), ③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355억 6,500만원) 정산 등을 포함한 법정 의무경비 8,886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19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편성한 ①조정교부금중 346억 8,700만원과 ②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중 298억 6,500만원을 추경안을 통해 정산하고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1〉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19년도 본예산 미편성분 ②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③=①+②
			(계)	'19년도 추경안 포함 ①	추경안 미편성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⑦	2,141,910	2,125,210	16,699	64,552	2,189,762
법 정 경 비 등	소계	⑥=①+...+⑤	905,373	888,673	16,699	64,552	953,223
	자 치 구 교 부 주 1)	①	540,124	540,124	-	34,687 <sup>주4)</sup>	574,811
	교 육 청 전 출 주 2)	②	299,901	299,901	-	-	299,901
	재 산 세 도 시 지 역 분 증 수 분 주 3)	③	35,565	35,565	-	-	35,565
	지 역 자 원 시 설 세 (특 정 부 동 산 분)	④	13,081	13,081	-	-	13,081
	지 역 상 생 발 전 기 금	⑤	16,699	-	16,699 <sup>주5)</sup>	29,865 <sup>주6)</sup>	29,865
순 세 계 잉 여 금	소계	⑧=⑦-⑥	1,236,536	1,236,536	-	-	1,236,536
	감 채 기 금	⑨=⑧×0.5이상	618,269	618,269	-	-	618,269
	가 용 재 원	⑩=⑧-⑨	618,267	618,267	-	-	618,267

※ 백만원 미만 절사,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579('19. 5.27) 재구성

주1)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세 징수교부금

주2) 지방세 전출, 담배소비세 전출, 지방교육세 전출

주3)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 70%,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 20%,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 10%

주4) '19년도 본예산 미편성분 : 346억 8,700만원

주5) '20년도 추경시 반영예정

주6) '16회계연도 이전 미전출분 : 34억 4,400만원, '17회계연도 결산분 : 264억 2,600만원

〈표 4-2〉 '18회계연도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법정경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정산 필요액	근거	재원
자치구출 전	계	540,124	-	-
	조정교부금	402,691 <sup>주1)</sup>	◦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시행령 제117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시세중 보통세의 22.6% -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정보전금	87,983	◦ 「지방세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26조 및 제27조	◦ 특별시분 재산세 100%
	징수교부금	49,449	◦ 「지방세징수법」 제17조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 ◦ 「서울특별시시세징수조례」 제5조	◦ 시세중 자치구 위임세목의 3% - 취득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계	299,901		
	지방세	191,752 <sup>주2)</sup>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	◦ 보통세 10% ◦ 담배소비세 45% ◦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7,413		
	지방교육세	115,562		
타회계 출	계	35,565	-	-
	도시개발 특별회계 출	24,895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8조에 근거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주택사업 특별회계 출	7,1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정비계정)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교통사업 특별회계 출	3,556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13,081	◦ 「지방세법」 제142조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제4조	◦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
지역상생발전기금		16,699 <sup>주3)</sup>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지방소비세 증수분 반영 필요

주1) 추경안의 **조정교부금**은 ①'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4,026억 9,100만원과 ②'19년도 미편성분 346억 8,700만원, ③지방소비세 인상분 984억 1,700만원 (4,354억 7,400만원의 22.6%)이 포함된 **5,357억 9,500만원**으로 제출됨

주2) 추경안의 **지방세전출**은 ①'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1,917억 5,200만원과 ②지방소비세 인상분 435억 4,700만원 (4,354억 7,400만원의 10%)이 포함된 **2,352억 9,900만원**으로 제출됨

주3)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미편성 됨에 따라 향후 정산 필요

## 2) 국비 변경 등에 따른 증·감편성 요청

- 국고보조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가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정부가 국비 등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인 바,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된 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세입 예산에 국비를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Matching)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예산이 편성된 후 국비가 당초 편성액보다 증액교부 되거나 감액교부 되면 추경안을 통해 기 편성된 국비를 세입·세출예산에서 증·감조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시비도 세출예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금번 추경안의 경우, 국비 증액교부에 따라 **의료급여사업**(국비 528억 8,000만원, 시비 1,428억 8,000만원 증액)을 포함한 94개 세부사업은 기정예산에 대해 증액편성을 요청하고,
  - 국비 감액교부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지원**(국비 △209억 6,400만원, 시비 △99억 8,000만원 감액)을 포함한 25개 세부사업은 기정예산에 대해 감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 국비의 경우, 교부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으나 회계연도중 중앙정부의 변경내시를 모니터링하여 추경을 통해 편성액을 조정함으로써 세입에는 국고보조금의 부족수납을 최소화하고, 세출에는 이른바 ‘재원 없는 불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응편성된 시비 또한 비효율

적인 운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인 바,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감염병표본감시**의 경우, '19년 3월, 질병관리본부가 국비교부액을 기편성된 국비(7,000만원)보다 △200만원 감액된 6,800만원으로 변경내시하여 금번 추경안중 세입예산을 기편성된 국비(7,000만원)보다 △200만원 감액편성 요청하였으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체의 감액편성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나 개별 세부사업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이 함께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감액편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시의회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A〉 국비 증액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증액편성이 요청된 사업 (5억원 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액	국비		추경안
				국비	시비	
복지정책실	의료급여사업	(×624,426) 1,253,566	195,760	52,880	142,880	(×677,306) 1,449,326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56,418) 113,563	90,497	47,270	43,227	(×103,688) 204,06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수당 지원	(×264,935) 388,584	38,862	26,311	12,550	(×291,246) 427,447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76,963) 140,633	36,592	22,245	14,347	(×99,208) 177,226
복지정책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미지급금 관리	-	19,644	11,481	8,162	(×11,481) 19,644
기후환경본부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3,000) 6,100	18,230	9,115	9,115	(×12,115) 24,330
기후환경본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2,895) 5,424	18,170	11,255	6,915	(×14,150) 23,594
주택건축본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75,600) 176,186	17,610	7,560	10,050	(×83,160) 193,796
복지정책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활동지원금 급여	(×129,069) 258,518	17,018	7,174	9,843	(×136,244) 275,537
도시교통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5,000) 32,500	15,936	7,355	8,581	(×22,355) 48,436
기후환경본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	10,800	6,000	4,800	(×6,000) 10,800
복지정책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63,387) 137,345	8,779	4,051	4,727	(×67,439) 146,124
문화본부	풍납토성 복원	(×56,770) 125,300	8,264	5,785	2,479	(×62,555) 133,564
기후환경본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1,000) 2,000	7,500	4,500	3,000	(×5,500) 9,500
소방재난본부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1,515	6,048	3,024	3,024	(×3,024) 7,563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1,361) 250,511	5,940	2,255	3,684	(×83,617) 256,451
노동민생정책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6,467) 8,623	5,386	4,039	1,347	(×10,506) 14,009
시민건강국	난임부부 지원	(×185) 402	5,311	2,451	2,859	(×2,637) 5,713
노동민생정책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9,566) 12,756	4,798	3,670	1,128	(×13,237) 17,555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서울 의료원 운영 보조	(×2,250) 19,841	3,926	250	3,676	(×2,500) 23,768

※ 회계간 사업이관(일반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인해 증액편성이 요청된 3개 세부사업[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 ③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균형발전특별회계)]은 제외함

〈표 4-3B〉 국비 증액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증액편성이 요청된 사업 (5억원 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액	국비		추경안
				국비	시비	
복지정책실	중증장애인연금	(×79,980) 135,441	3,708	2,187	1,520	(×82,167) 139,149
복지정책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생계급여	(×467,108) 693,552	3,443	2,348	1,095	(×469,456) 696,995
복지정책실	긴급복지지원사업	(×16,452) 24,678	3,000	2,000	1,000	(×18,452) 27,678
문화본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3,172) 19,512	2,717	1,818	898	(×14,991) 22,230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855) 1,221	2,551	1,785	766	(×2,640) 3,772
경제정책실	지역공동체 일자리	(×3,500) 5,251	1,512	1,008	503	(×4,508) 6,763
복지정책실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4,149) 5,732	1,445	990	454	(×5,139) 7,178
도시교통실	장애인콜택시 운영	(×-) 45,698	1,389	756	633	(×756) 47,087
푸른도시국	암사역사공원 조성	(×1,000) 2,472	1,250	1,000	250	(×2,000) 3,722
여성가족정책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14,127) 211,768	1,213	654	559	(×114,781) 212,98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지정 운영	(×9,565) 12,865	1,119	1,007	111	(×10,572) 13,984
복지정책실	용미리 자연장지 조성	(×644) 921	1,079	755	323	(×1,400) 2,000
복지정책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958) 3,284	954	477	477	(×1,435) 4,238
문화본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750) 3,500	944	472	472	(×2,222) 4,445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	(×3,477) 6,995	837	346	491	(×3,823) 7,832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571) 1,934	806	237	568	(×808) 2,740
복지정책실	장애인 직업 재 활 시설 기능 보 강	(×688) 1,377	775	387	387	(×1,076) 2,152
시민건강국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 국가 예방접종 실시	(×36,548) 84,965	558	322	235	(×36,871) 85,523
도시교통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2,130) 10,648	550	350	200	(×2,480) 11,198
여성가족정책실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	(×267) 2,092	519	82	437	(×350) 2,612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898) 1,348	503	335	167	(×1,234) 1,851

※ 회계간 사업이관(일반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인해 증액편성이 요청된 3개 세부사업[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 ③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균형발전특별회계)]은 제외함

〈표 4-4〉 국비 감액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감액편성이 요청된 사업 (△3억원 이상 감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감액	국비		추경안
				국비	시비	
복지정책실	자활근로사업 지원	(×77,435) 113,572	△30,945	△20,964	△9,980	(×56,471) 82,627
주택건축본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275,485) 404,045	△16,110	△10,984	△5,125	(×264,501) 387,935
복지정책실	자활장려금	(×6,314) 9,261	△2,602	△1,776	△825	(×4,538) 6,659
복지정책실	시립장사시설 화장로유지보수	(×2,149) 4,298	△2,230	△1,115	△1,115	(×1,034) 2,068
문화본부	풍납토성복원 차입금이상환	(×1,330) 1,900	△1,121	△785	△336	(×544) 778
경제정책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5,227) 9,068	△700	△420	△280	(×4,807) 8,368
시민건강국	응급의료기관 지원	(×5,730) 5,730	△602	△602	-	(×5,128) 5,128
노동민생정책관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486) 1,458	△567	△189	△378	(×297) 891

※ 회계간 사업이관(일반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인해 감액편성이 요청된 3개 세부사업(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③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은 제외함



### 3) 회계간 전출·입에 따른 세출편성

- 금번 추경안의 경우, '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회계간 법정전출금을 편성하고, 일부 회계의 자원부족을 완화시키고자 회계간 전출금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로 전출금 5,124억 2,1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회계 고유목적사업은 물론 차입금 상환, 회계간 전출·입을 통해 타 회계 재정지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표 4-5〉 회계간 전출·입 편성현황<sup>주1)</sup>

(단위 : 백만원)

전출	전입	추경안 증·감액	산출근거	
총	계	536,893	-	
일반회계	소 계	512,421	-	-
	교통사업특별회계	47,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원부족분 전입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44,291</li> <li>◦ 주차장관리계정 전입금 △442</li> <li>◦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 3,556</li> </ul>	
	주택사업특별회계	178,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회계전입금(국민계정) 73,000</li> <li>◦ 일반회계전입금(도정계정) 98,500</li> <li>◦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 7,113</li> </ul>	
	도시개발특별회계	79,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회계 전입금 54,774</li> <li>◦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 24,895</li> </ul>	
	균형발전특별회계	60,368	◦ 균형발전특별회계 회계이관 등에 따른 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60,36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2,993	◦ 의료급여사업(일반회계 전입금) 142,993	
	소방안전특별회계	2,7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13,081</li> <li>◦ 소방안전교부세 △4,458</li> <li>◦ 일반회계전입금 △5,844</li> </ul>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92	◦ 일반회계전입금 59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4,472	◦ 도시철도사업비특별회계 전입금 24,472

※ 주1) 법정전출금 제외. 단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출금 포함

- 금번 추경안의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편성요청한 바,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법정경비(1조 673억 9,000만원)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회계중 감채기금에 적립하기 위해 기금전출금 6,182억 6,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또한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전출하고자 기금전출금 13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다만, 조례에 근거하여 감채기금에 전출하기 위해 기금전출금을 편성한 것이나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열거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재원은 ①출연금, ②차입금, ③융자금, ④기타 수입금만을 명시하고 있는 바,

- 일반회계의 세출과목인 기금전출금을 편성하여 전출하여도 해당 기금이 수입처리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목을 정하고 있는 바,
  - 기금의 수입과목은 전입금을 포함한 9개 과목으로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명시된 출연금은 기금의 수입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금의 수입과목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 기금의 재원 조성을 명문상으로 검토하면, 일반회계 세출과목중 기금전출금 6,182억 6,900만원은 일반회계 세출과목으로 편성할 수는 있으나
  - 관련 조례가 전출금이 아닌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정비 이전에 전출금을 동 기금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조례위반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세출편성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자 21개 세부사업(1,090억 1,900만원)에 대해 회계별 경정을 요청하거나 신규편성 등을 요청한 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493억 2,900만원)을 포함한 8개 사업은 회계간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액 전액을 감액하고, 그 재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는 세부사업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이며 경제정책실 소관 **로봇과학관 건립**(11억 1,700만원)은 일반회계중 기정예산 4억 4,9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일부 증액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중 11억 1,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문화본부 소관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94억 3,800만원)을 포함한 7개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된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하고, 그 재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는 세부사업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이며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된 기정예산(363억 7,800만원)중 △233억 7,800만원을 감액요청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233억 7,8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실 소관 **관악 창업센터 조성**(51억 2,500만원)을 비롯한 4개 세부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한 세부사업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6〉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회계이관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 본 부 국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편 성 특 징
여성가족정책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9,329	회계이관 (일반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복지정책실	노인복지관 확충	1,000	"
문화본부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294	"
"	서서울미술관 건립	1,311	"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097	"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653	"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1,815	"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300	"
경제정책실	로봇과학관 건립	1,117	회계이관 및 증액 (일반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본부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38	회계이관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	삼척각리모델링	789	"
"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1,237	"
"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200	"
"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200	"
"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	3,245	"
"	정릉동 차고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205	"
"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23,378	회계이관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기편성된 130억원 유지
경제정책실	관악 창업센터 조성	5,125	신규편성 (균형발전특별회계)
여성가족정책실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3,500	"
도시재생실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220	"
관광체육국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	565	신규편성 (균형발전특별회계) ※ 일반회계 기편성된 4억원 유지

## 5) 결산이후 국고보조금의 반환

- 세출과목중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으로서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반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재무활동에 해당되어 사업별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예산안에만 기재하고 있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16개 실·본부·국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액 272억 6,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요청 하고 있는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세출과목을 반환금기타(편성목), 국고보조금 반환(통계목)으로 정하고 있어 서울수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는 단일 세부사업명으로 일치시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16개 실·본부·국의 44개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명을 모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편성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4-7A〉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세부사업 편성요청 현황

(단위 : 천원, 쪽)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증액요청	예산서
여성가족정책실	국 고 보 조 금 반 환	246,337	98
	”	335,848	104
	”	1,890,430	106
	”	4,660	107
스마트도시정책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8,326	130
	”	14,683	130
경 제 정 책 실	국 고 보 조 금 반 환	25,685	148
복 지 정 책 실	국 고 보 조 금 반 환	86,000	157
	”	140,000	162
	”	112,082	165
도 시 교 통 실	국 고 보 조 금 반 환	40,648	182
문 화 본 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170	187
	”	110,001	190
	”	592,000	196
기 후 환 경 본 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987,596	207
	”	763,141	208
	”	11,427	209
평 생 교 육 국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51,047	234
	”	2,451	235
관 광 체 육 국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100	241
	”	9,752	241
	”	150,477	243
	”	238,000	244
	”	693,000	246



〈표 4-7B〉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세부사업 편성요청 현황

(단위 : 천원, 쪽)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증액요청	예산서
시 민 건 강 국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83,497	253
	”	65,951	255
	”	139,517	256
	”	94,309	258
	”	4,717	259
	”	70,058	261
	”	40,662	263
도 시 재 생 실	국 고 보 조 금 반 환	944,859	303
도 시 계 획 국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977	313
	”	394	314
푸 른 도 시 국	국 고 보 조 금 반 환	53,553	330
	”	13,075	331
	”	68,328	333
	”	191,761	334
	”	241,311	335
물 순 환 안 전 국	국 고 보 조 금 반 환	521,973	347
	국고보조금 반환(도시개발특별회계)	5,002,066	348
	국 고 보 조 금 반 환	38,922	35 <sup>주1)</sup>
도시기반시설본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2,966,742	371
서울역사박물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5,500	384

※ 주1)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 6)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되는 바,
  - 우리 시의회는 이미 2019년도 본예산 의결시 예산총칙을 포함하여 의결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편성을 요청하고 있어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 등을 연동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은 당초 35조 7,416억원으로 의결하였으나 회계연도내 간주처리된 723억원을 합한 기정예산(35조 8,139억원)보다 2조 8,656억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대비 증감액만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하고 있어 동 특별회계에 1,090억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예산총칙 제4조는 공채발행 및 차입금 관련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임

-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도 2019년도중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출하고, 특별회계는 ①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553억원, ②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19억원, ③주택사업특별회계 1,846억원, ④도시개발특별회계 1조 1,623억원, ⑤균형발전특별회계 395억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제출한 것임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도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을 1조 2,856억원으로 통보 받은 바 있고,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산식에 의해 ①도시철도채권 발행액과 ②기본한도액(1조 2,856억원)의 25%(3,214억원) 이내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하여 발행되는 지방채를 별도한도액(1조 1,165억원)으로 정하고 있음

〈표 4-8〉 지방채 발행한도 및 실제 발행현황

(단위 : 억원)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기 본 한 도 액	12,856	12,368	11,270	9,411
실 제 발 행 액	(진행중)	3,776	8,312	5,94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11233 ('18.10.31)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105 ('19. 4.30)

-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도 '19년도 본예산의 경우와 같이 2019년도 지방채 발행 총한도는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기본한도액(1조 2,856억원)과 별도한도액(1조 1,165억원)을 합한 2조 4,021억원으로 사료되는 바
- 회계연도중 5개 특별회계가 지방채 발행 한도까지 지방채를 실제 발행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출된 추경안의 지방채 발행한도 총액은 본예산보다 △229억원 감액되어 제출된 것으로서 발행한도 이외의 추가발행 여력을 최소한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표 4-9〉 예산총칙중 공채발행 및 차입금 한도 비교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대비증감
계	2,366,715	2,343,764	△22,95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55,348	855,348	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4,770	101,920	△42,850
주택사업특별회계	184,650	184,650	0
도시개발특별회계	1,181,947	1,162,327	△19,619
균형발전특별회계	-	39,519	39,519 (순증)

## 2.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 1) 서울혁신기획관

####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5)

- 동 사업은 총사업비 104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20년 12월까지 노원구(중계동)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준공 및 개관하고자 자치단체자 본보조 26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0〉 노원구 마을활력소(중계마을복지센터) 재원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 0 1 7	2 0 1 8	2 0 1 9	2 0 2 0
계	10,417	150	848	8,719	700
시 비	2,690	-	-	2,690	-
구 비	5,727	150	248	4,629	700
특별교부세	600	-	600	-	-
특별교부금	1,400	-	-	1,400	-

※ 자료근거 : 노원구, 마을공동체과-2128 ('19. 2.22)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변경 계획(안)

- 노원구(중계동)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19년 7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 하고 '19년 9월부터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나

- 노원구의 계획대로 '19년 9월에 공사가 추진되더라도 연도말까지 공사기간이 4개월만 남아있어 추경예산으로 26억 9,000만원을 편성 하여 해당 자치구로 교부하여도 회계연도중 자치구가 집행하는데 물 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실

제 집행가능한 소요액을 자치구와 협의하여 일부 감액교부하는 방안  
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 여성가족정책실

### □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사업별설명서 1권, p.173)

- 동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정서불안, 학습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수행주체에 대해 사업비(10억 7,000만원)와 성과보상금(3억 2,100만원)을 지급하고자 사회성과보상금 13억 9,1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표 4-11〉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사 회 성 과 보 상 금	0	1,391	1,391	○ 사업비(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1,070		
				○ 성과보상금		321	

- 편성 요청된 사회성과보상금은 행정안전부가 해당 세출과목을 신설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18년 7월, 통보한 바,
  - 사회성과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사회성과보상사업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경비로서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통해 동 세출과목의 편성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는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기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14년 9

월, 관련 동의안을 의회로부터 의결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세출과목의 지출근거 또한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19년도부터 신설된 사회성과보상금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처음 편성 요청된 것으로서 향후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가능한 분야에 대해 사회성과보상금 편성이 증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설치** (사업별설명서 1권, p.197)

- 동 사업은 초등공적돌봄을 확대 추진하고자 자치구별 1개소씩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 125억원을 포함한 127억 9,4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2〉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설치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자치단체 자본보조	0	12,794	12,794	○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확보 임차료 - 500백만원×1개소×25개 자치구	12,500		
				○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판제작 - 300만원×98개소	294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중 98개소의 키움센터에 돌봄 통합브랜드를 적용한 현판제작비용 2억 9,4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현판 제작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을 변경할 만큼 시급한 사안에 해당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는 금년도에 계획한 98개소의 키움센터 현관에 통합 브랜드가 적용될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이라는 인식과 통일감이 전달될 것이라는 의견일 수 있으나
- “서울케어”는 현관 등을 통한 외형적 통일성 보다는 정책효과를 통한 시민의 직접 체감이 우선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관제작 및 배부를 위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돌봄 통합브랜드인 “서울케어”는 의료·건강, 사회복지, 아동·가족분야 3,126개 시설에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지난 3월 공개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계획수립이후 2개월 이상 경과된 지난 5월27일 “서울케어” 통합브랜드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부한 바,
- 이는 동 예산에 대해 시의회에 승인을 압박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향후 ‘예산소요 및 의회의결’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사업부서가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등 시의회의 의결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추경안중 “서울케어” 통합브랜드 적용을 위한 현관·간판 교체와 여성일자리 통합브랜드 “일누리” 적용을 위한 간판 교체 등 5개 세부사업, 8억 400만원이 현관·간판 교체를 위해 편성요청된 바,

- 관련 편성요구건의 경우, “서울케어”, “일누리” 등의 통합브랜드 적용이라는 특수요인 뿐만 아니라 시급성 등이 우선시 되는 일반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에 대한 일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3〉 현판·간판 관련 추경안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 정 예산	증·감	추 경 예산 (안)	산 출 내 역
여성가족 정책실	다함께 돌봄-설치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0	294	294	○ 현판제작 294,000천원 3,000천원×98개소
”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0	280	280	○ 간판등교체 - 24개소 250,000천원 ○ 간판등디자인비용 30,000천원
시민건강국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서울케어 브랜드 확산	0	101	101	○ 옥외간판교체 - 서울케어적용 24,700천원 ○ 본관안내사인교체 - 서울케어적용 26,300천원 ○ 시설물교체대비본관도장 - 6,580m <sup>2</sup> ×7,600원 50,000천원
” (은평병원)	은평병원 서울케어 브랜드 확산	0	69	69	○ 간판 및 외부사인물 교체공사 69,000천원
” (서북병원)	서북병원 서울케어 브랜드 확산	0	60	60	○ 간판 등 교체 60,000천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746 ('19. 6. 3)

□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사업별설명서 1권, p.201)

- 동 사업은 '19년도중 공간을 임차하여 1,000 $m^2$  이상 규모의 초등 돌봄기관 1개소를 '20년 1월 개소하고자 시설비 35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이나 다수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부적절한 통계목 설정으로 행정안전부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별설명서에는 시설비 35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①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료 6억원, ②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원, ③기자재비 6억원, ④ 통학버스 구입비 5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4-14〉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시설비	-	3,500	3,500	○ 거점형키움센터(1개소) 조성 : 35억원 - <u>임차료 : 6억원(보증금 포함)</u> - <u>설계·감리 및 공사비 : 18억원</u> - <u>기자재비 : 6억원</u> - <u>통학버스 구입 : 5억원</u>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9. 5), p.202  
 ②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7177 ('19. 6. 5)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중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관련 회신” 재구성

-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토지, 건물 등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보증금은 **기타자본이전**, 공사 감리비는 **감리비**, 자

산이나 물품의 취득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른 세출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시설비**로 일괄 편성요청한 바,

■ 소요예산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행사한 것이나, 시설비에서 임차료(6억원), 감리비, 기자재비(6억원), 통학 버스 구입비(5억원) 등을 지출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는 지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 만일 사업부서가 편성요청된 **시설비**를 회계연도중 적정 세출과목으로 전용이나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여지도 있으나 **시설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이나 변경이 불가능한 바

■ **감리비**를 제외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기타자본이전** 등으로 전용이나 변경하여 지출할 수 없어 당초 편성한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 편성 사례는 사업부서가 예산과목을 설정함에 있어 35억원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할 경우, 당초 계획한 용도대로는 집행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소요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사료되며 편성요청된 대로 우리 의회가 승인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시설비중 17억원은 용도대로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지 않고, 예산부터 의결요청함에 따라 소요 예산이 적정규모인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사업대상지의 선정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는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시설비 35억원을 우선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는 추경안 의결 이후 7월중 확보할 계획으로 제출함

- 사업부서는 시설비 35억원의 세부산출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며 보증금, 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①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료(6억원), ②설계·감리 및 공사비(18억원)로 표기된 포괄적인 내용을 제출한 바,

- 이는 사업대상지 선정결과에 따라 보증금을 포함한 관련 세부내역별 소요예산액이 유동적인 상태임을 입증한 것으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차후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는 결과에 맞추어 확보된 예산을 유동적으로 집행하려는 사례일 수밖에 없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35억원)이 적정규모라고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예산편성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선(先) 예산확보·후(後) 절차이행’이라는 절차적 모순이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의결을 요구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시설비 35억원중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의 「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과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

## 야 함

- 그러나 '19년 7월중 사업대상지를 확보한 다음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못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 넷째, 설계입찰이후 '20년 1월, 개소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을 재산정하고 편성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부서가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①'19년 7월중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장소 확보 및 계약을 체결하고, ②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의뢰할 계획인 바,
    - 장소선정 및 확보와 기술심사를 이행하게 되면, 금년 7월 이후 약 5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①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②기본 및 실시설계, ③리모델링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④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나
    - 설계입찰 및 계약 ➡ 공사입찰 및 계약 ➡ 본공사 등의 과정에 소요되는 절대공기가 있어 '20년 1월 개소는 사실상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사업부서는 '19년 8월, 마을건축가를 활용한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설계입찰과 계약기간을 단축함으로써 '20년 1월, 거점형 키움센터 개소를 계획한 것으로 사료되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 사업의 설계는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바,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 따라 마을건축가에게 설계하도록 할 경우, 「지방계약법」 위반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법률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따라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 전액이 확보되어도 설계입찰과 계약에 절대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편성요청 된 소요예산(시설비 35억원) 전액을 의결할 경우, 이월이 전제된 예산편성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동 편성요청건은 ①편성요청액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편성이나 지출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②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에 대한 유동성으로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③선행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④설계입찰부터 본공사까지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어 이월이 전제된 예산편성 사례일 수밖에 없어 소요예산(35억원)의 승인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3) 노동민생정책관

####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233)

○ 동 사업은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개소(도심권, 동남권)를 신규 설치·운영하고자 기정예산(48억 5,400만원)보다 9억 1,8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시설 임대보증금 및 계약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8,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하고, ②시설유지보수(리모델링)를 위한 경비(2억원) 등을 수탁기관에 교부하고자 **민간위탁금** 8억 3,8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5〉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4,854	918	5,773	
사무관리비	-	80	80	○ 2개 시설 <b>임대보증금</b> 및 계약수수료 : 8,000만원
민간위탁금	-	838	838	○ 인건비 : 2억 2,033만원 = 22,033,800원(6명) × 5개월 × 2개소 ○ 관리운영비(임대료, 공과금 등) : 1억 6,400만원 = 16,452,500만원 × 5개월 × 2개소 ○ <b>시설유지보수(리모델링)</b> : 2억원 = 1억원 × 2개소 ○ 사업비 : 2억 4,000만원 = 3,000만원 × 4개월 × 2개소 ○ 자산취득비 : 1,379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54	-	4,854	-



○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①**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의 경우, **사무관리비가 아닌 기타자본이전**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②**위탁사업**의 사업비중 시설물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은 시설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8,000만원)를 **사무관리비**로 편성요청 하고, 시설물**유지보수(리모델링)**를 위한 경비(2억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요청 하고 있어 관련기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편성사례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금(8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바, 민간위탁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5월 24일 시의회에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중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6월19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민간위탁금(8억 3,800만원)에 대한 승인여부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의 의결결과와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 금년 3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제5항이 신설되어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은 시장이 편성한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19. 5.23)된 이후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19. 5.24)한 것으로 확인됨
- 동 민간위탁금 편성사례는 조례의 신설취지를 등한시한 사례로 의회의 동의절차를 먼저 이행한 이후 민간위탁금을 편성요청 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별설명서 1권, p.237)

○ 동 사업은 기정예산(3억원)보다 1억 9,000만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서,

- ①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서울사무국을 '19년 7월 개소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② '19년 12월 개최할 계획인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의 초청도시가 당초 15개에서 45개로 증가되어 **행사운영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6〉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300	190	490	
사무관리비	30	60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협의체 사무국 설치비용(사무집기 등) : 2,000만원</li> <li>○ 인건비(7월~12월, 2인) : 4,000만원</li> </ul>
행사운영비	270	130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청도시 확대(15개→45개)에 따른 초청비용 증가 : 1억 3,000만원</li> </ul>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동 사업의 경우, 지난 5월 14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여 행사운영비 4억원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사무관리비의 경우, 도시협의회 사무국 설치비용(2,000만원)과 인건비(4,000만원)가 포함된 6,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나,
- 도시협의회 사무국에 대해 경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4일 시의회에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중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6월19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증액편성 요청된 사무관리비(6,000만원)는 관련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결과와 연계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270)

- 동 사업은 사무관리비(5억원)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5억원)이 포함된 10억원을 추가로 편성 요청한 것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 80개 시장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 등 판매촉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으로 시민 방문을 유도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5억원을 추가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표 4-17〉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940	1,000	2,940	-
사무관리비	50	500	550	○ 제로페이 홍보비 (추석명절이벤트) 260 ○ 제로페이 홍보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 24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90	500	2,390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추진비 400 ○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100

- 사무관리비(5억원)의 경우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는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 등과 병행하여 장바구니 등 제로페이 홍보용품을 제작·배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음
- 동 사업의 편성취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전통시장에 대한 컨설팅 추진을 비롯한 각종 이벤트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추경편성을 통해 장바구니 등 제로페이 홍보용품을 제작·배포하는 것이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방문을 얼마나 확대시킬 수 있을지 개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동 사업과 관련된 방침을 검토하면, 예산지원에 있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한 행사비 차등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자칫 동 사업이 당초 취지보다 제로페이 홍보 수단으로 오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추석명절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에서 이벤트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로페이 홍보를 위한 장바구니를 제작·배부하는 것은 정책 홍보의 효율성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동 사업의 주된 편성 취지는 제로페이 홍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추경을 통해 제로페이 홍보를 위한 장바구니 제작 등은 보다 신중히 판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중앙정부 내시 없이 증액편성 요청된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사업별설명서 1권, p.284)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296)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사업은 기정예산 86억 2,300만원(국비 64억 6,700만원 포함)보다 53억 8,600만원(국비 40억 3,900만원 포함)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서,
  - '18년도분 미지급 인건비(13억 9,500만원) 지원 등으로 사업비 부족이 발생되어 국비 40억 3,900만원과 매칭시비 13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8〉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467) 8,623	(×4,039) 5,386	(×10,506) 14,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도 사업비 부족액 : 53억 8,600만원 = 소요액 140억 900만원 - 기정예산 86억 2,300만원</li> <li>○ 소요액(140억 900만원)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11월, 12월 미지급 인건비 지급액 : 13억 9,500만원</li> <li>- 기 채용된 일반인력(421명) 인건비 : 63억 2,800만원</li> <li>- '19년도 신규선발 일반인력(150명) 인건비 : 8억 6,100만원</li> <li>- 기 채용된 전문인력(119명) 인건비 : 24억 6,100만원</li> <li>- '19년도 신규승인 전문인력(183명) 인건비 : 29억 6,400만원</li> </ul> </li> </ul>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12억 2,100만원(국비 8억 5,500만원 포함)보다 25억 5,100만원(국비 17억 8,500만원 포함)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서,

- '18년도분 미지급 사회보험료(8억 6,400만원) 지원 등으로 사업비 부족이 발생되어 국비 17억 8,500만원과 매칭시비 7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9〉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55) 1,221	(×1,785) 2,551	(×2,640) 3,7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도 사업비 부족액 : 25억 5,100만원 = 소요액 37억 7,200만원 - 기정예산 12억 2,100만원</li> <li>○ 소요액(37억 7,200만원)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7월~12월 미지급 사회보험료 지급액 : 8억 6,400만원</li> <li>- 기 지원근로자(1,139명) 계속지원 소요액 : 23억 200만원</li> <li>- '19년도 신규근로자(300명) 지원예산 소요액 : 6억 600만원</li> </ul> </li> </ul>

○ 동 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금년 4월, 사업부서는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국비를 추가교부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중 타 시·도의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재배정할 예정이라고만 회신('19. 4)하였을 뿐, '19년 6월 현재까지 국비에 대한 추가교부를 내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중앙정부의 내시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부서가 산정한 부족사업비만을 근거로 국비와 이에 대응되는 시비를 증액편성 요청한 사례에 해당되는 바,

-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은 있으나, 국비에 대한 교부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아 국비 부족수령이나 초과수령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경제 정책 실

##### □ **인베스트서울 센터(ISC) 조성** (사업별설명서 1권, p.381)

- 동 사업은 도심내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인베스트서울 센터(ISC)를 조성하고자 16억 2,1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0〉 인베스트서울 센터(ISC) 조성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 감	추 경 예 산(안)	산 출 내 역
계	-	1,621	1,621	
사무관리비	-	550	550	○ 인베스트서울 센터(ISC) <b>임차보증금</b> 등 : 5억 5,000만원
시 설 비	-	941	941	○ 인테리어 등 실내건축비 : 6억 7,500만원 ○ 전기설비비 : 2억 2,500만원 ○ 건물외벽 시안물 용역비 : 4,100만원
감 리 비	-	20	20	○ 건축감리 : 1,000만원 ○ 전기감리 : 1,000만원
시설부대비	-	60	60	○ <b>건축설계</b> : 2,000만원 ○ <b>전기설계</b> : 2,000만원 ○ <b>건물안전진단비</b> : 2,000만원
자산및물품 취 득 비	-	50	50	○ 사무용 가구 구매 : 2,000만원 ○ 컴퓨터 등 장비 구매 : 3,000만원

- 동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5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임차보증금** 5억원과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미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던 **임차보증금**을 **기타자본이전**으로 설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도 **보증금**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기타자본이전**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은 관련기준의 개정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임차보증금**(5억원)을 부적절한 예산과목(**사무관리비**)으로 편성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설계비** 4,000만원(건축설계비 2,000만원, 전기설계비 2,000만원)과 **건물안전진단비**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 요청한 것이나,
-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설계비**와 **안전진단경비**는 **시설부대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과목 설정에 있어 관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검증마저 소홀히 한 사례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추경안 제출시점('19. 5.23)을 경과한 지난 5월 31일에서야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동 계획에는 사업대상지의 규모와 선정기준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대상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추경안이 의결된 이후 '19년 7월, 사업대상지를 확보하고 '19년 8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서울시의 「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

기준」과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할 사전절차에 해당되는 바,

- 동 사업은 설계비(4,000만원)와 감리비(2,000만원), 건물안전진단비(2,000만원)를 포함한 기술용역비(8,0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를 구체화하지 못하여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됨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16억 2,100만원)중 기술용역비(8,000만원)는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후속되는 설계·감리·건물안전진단 또한 불가하며 리모델링 공사 등도 불가하다는 점에서 소요예산(16억 2,100만원) 전액의 승인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나 사업별설명서의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행여부도 누락시키고 있어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한 사례로 사료됨

□ **관악 창업센터 조성** (사업별설명서 1권, p.385)

- 동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51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1〉 관악 창업센터 조성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계	-	5,125	5,125	
시 설 비	-	5,000	5,000	○ 토지 및 건물 매입 : 50억원
시설부대비	-	125	125	○ <u>설계비</u> : 7,500만원 ○ <u>안전진단비</u> : 3,000만원 ○ 토지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비용 등 : 2,000만원

○ 동 사업의 경우, '18년 10월부터 '20년 8월까지 총 70억 3,200만원(전액 시비)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매입 등을 통해 취득하려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편성요청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매입비(50억원)와 설계비(7,500만원)를 승인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 5월 24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비(50억원)와 설계비(7,500만원)의 승인여부는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원회(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결과와 연계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소요예산의 산출기초중 설계비(7,500만원)와 안전진단비(3,000만원)를 **시설부대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설계비와 안전진단경비는 **시설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통계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사업별설명서 1권, p.400)

- 동 사업은 기정예산(44억 1,600만원)보다 34억 5,800만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서,

〈표 4-22〉 양재 R&CD 혁신기구 육성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계	4,416	3,458	7,875	
사무관리비	1,242	858	2,101	○ 민간건물 임차보증금 및 임차비 : 8억 5,800만원 - 임차보증금 : 5억원 - 임대료 및 관리비 : 3억 5,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100	100	○ 민간건물 임차에 따른 가구 및 집기 비치 : 1억원
시 설 비	929	2,500	3,429	○ 민간건물 임차·개보수 : 10억 4,300만원 - 공사비 : 9억 8,000만원 - 설계비 : 4,900만원 - <b>감리비</b> : 1,400만원 ○ 품질시험소 별관 개보수 : 11억 8,600만원 - 공사비 : 11억 1,300만원 - 설계비 : 5,500만원 - <b>감리비</b> : 1,600만원 ○ 품질시험소 별관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타당성조사 용역 : 1억 7,000만원 ○ 현상설계공모 : 1억원
민간위탁금	2,244	-	2,244	-

- AI기업 입주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①민간건물을 임차하여 개보수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8억 5,800만원), 시설비(10억 4,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1억원)가 포함된 20억 2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②품질시험소 별관건물을 개보수후 사용하고자 시설비(11억 8,600만원)를 편성요청 한 것이며 ③품질시험소 별관부지내 신축을 추진하고자 시설비(2억 7,0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임

○ ③품질시험소 별관부지내 신축을 위해 편성 요청된 시설비(2억

7,000만원)는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1억 7,000만원)과 ㉡현상설계공모(1억원)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 바,

-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간 총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용역으로 추경을 통해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용역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 금년도중 준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금번 추경을 통해 용역비 전액(1억 7,0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어 자칫 이월이 전제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용역비 1억 7,000만원의 승인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현상설계공모비(1억원)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하는 용역이 금년도중 준공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이 경우, 현상설계공모 또한 금년도중 추진되지 못해 예산 이월이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용역 준공후 순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대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①민간건물을 임차하여 개보수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8억 5,800만원)를 편성요청한 바, **임차보증금** 5억원과 **임대료** 및 **관리비** 3억 5,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임차보증금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기타자본** **이전**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과목을 설정함에 있어 관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됨

○ 그 외에도 민간건물 임차·개보수를 위한 **감리비**(1,400만원)와 **품질 시험소** 별관건물 개보수를 위한 **감리비**(1,600만원)를 **시설비**로 편성요청한 바,

- 행정안전부는 **공사 감리비**를 예산과목(통계목)중 **감리비**로 별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과목 및 관련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결과로 판단됨

## 5) 복지정책실

### □ 의료급여사업 (사업별설명서 1권, p.437)

-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50대50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기정예산 1조 2,535억 6,600만원(국비 6,244억 2,600만원 포함)보다 1,957억 6,000만원(국비 528억 8,000만원 포함)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표 4-23〉 의료급여사업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624,426) 1,253,566	(×52,880) 195,760	(×677,306) 1,449,326	-
사무관리비	(×1,618) 3,236	-	(×1,618) 3,236	-
공공운영비	(×3) 6	-	(×3) 6	-
국내여비	(×4) 9	-	(×4) 9	-
민간위탁금	(×616,320) 1,237,353	(×52,880) 195,760	(×669,200) 1,433,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내시액 반영에 따른 증액 : 953억 6,000만원(국비 476억 8,000만원 포함)</li> <li>○ '18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예비비 지출을 통해 추가교부한 국비(900억원)에 대한 매칭시비 증액 : 900억원(전액시비)</li> <li>○ <u>정부추경에 따른 증액 : 104억원(국비 52억원 포함)</u></li> </ul>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481) 12,962	-	(×6,481) 12,962	-

- ※ 자료근거 : 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9280 ('18.12.12) "2019년도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확정내시 통보"
- ②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9123 ('18.12. 6) "18년도 의료급여 제2차 변경내시 통보(예비비, 4분기 변경 및 12월 교부 통보 포함)"
- ③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9. 5), p.438 등 재구성



- 동 사업은 ① '18년 12월, 보건복지부가 기편성된 국비(6,244억 2,600만원)보다 476억 8,000만원 증액된 6,721억 600만원으로 확정 내시함에 따라 국비(476억 8,000만원)와 매칭되는 시비(476억 8,000만원)를 포함한 953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며
  - ② '18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의 예비비를 지출하여 국비(900억원)를 추가 교부함에 따라 매칭시비 90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 ③ 정부추경에 따라 국비가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여 국비(52억원)와 시비(52억원)를 포함한 104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정부추경에 따라 증액편성 요청된 104억원(국비 52억원 포함)의 경우, '19년 4월, 보건복지부와 유선통화한 결과 등에 근거하여 국비가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 '19년 6월 15일 현재까지 정부추경에 대해 국회의 의결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국비를 추가교부하겠다고 공문으로 내시한 사실도 없어 정부추경 이후 실제 교부되는 국비 규모와는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보건복지부가 정부추경을 통해 ① '18년도말 기준 미지급금 발생분 533억 2,900만원과 ②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률 50% 하향조정에 따른 증가분 688억 800만원을 포함한 1,221억 3,7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부서의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률 50% 하향조정에 따른 증가분(688억 800만원)중 약 15%에 해당하는 국비 104억원이 서울시로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료되나
  - 정부추경을 통해 104억원의 국비가 서울시로 추가 교부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동 편성요청안에는 매칭시비 50%분을 반영한 국·시비 208억원이 아닌, 104억원의 50%에 해당하는 국비 52억원과 시비 52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증액편성 요청된 104억원 또한 부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이 의료급여비용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성은 있으나,
  - 회계연도중 교부될 국비의 실수령액에는 유동성이 있고, 사업부서가 산정한 소요예산의 규모 또한 일부 적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어 편성요청액의 적정규모를 재확인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규모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국비 초과수령이나 부족수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정부추경에 대한 국회의 의결결과와 이후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내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필요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라도 소요예산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선택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6) 도시교통실

###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기반 조성 (사업별설명서 1권, p.639)

- 동 사업은 연구용역비 △1억원을 감액요청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시연 등을 위한 특수 행사장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2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4〉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기반 조성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액
계	1,000	150	1,150	-	
행사운영비	900	250	1,150	○ 시연 및 체험행사를 위한 특수 행사장 조성	250
연구용역비	100	△100	0	○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이 이미 시행중에 있어 학술용역에 대한 시의성 상실	△100

- 사업부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위한 특수 행사장 조성을 위해 행사운영비 2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로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를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수 행사장 조성을 위해 행사운영비 편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려는 계획의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행사운영비 편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행사운영비의 경우, 기정예산(9억원)에 대한 투자심사보다 27.8%, 2억 5,000만원을 증가되어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심사규칙은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는 ‘당초 심사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일부 이동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에 대해 재심사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행사운영비의 경우, 지난 '18년 10월, 투자심사시 사업위치를 중구 소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하고 있고, 관련 방침에도 행사장소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추경안 제출('19. 5.23)이후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을 검토하면, 행사장소를 마포구 소재, 상암 누리꿈스퀘어 및 인근 광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 관련 규칙은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개최되는 사업은 재심사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추경안 편성에 앞서 재심사를 의뢰한 사실조차 없어 동 행사운영비는 행정안전부령을 위반한 편성 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19년 6월21일 현재, 편성요청된 행사운영비는 물론 장소 변경에 따라 기정사업에 대한 재심사가 의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경안중 행사운영비(2억 5000만원)은 편성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사장소를 변경하며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기정예산에 대해서도 절차이행후 적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결을 통해 지출을 유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7) 행정국

### □ **조정교부금** (사업별설명서 1권, p.962)

○ 행정국 소관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 징수액의 22.6%를 재원으로 25개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로

- 금번 추경에서는 ①'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보통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4,026억 9,100만원을 증액하고 ②'19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346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③지방소비세 인상분 984억 1,700만원이 포함되어 기정예산보다 5,357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5〉 조정교부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자 치 구 조정교부금	2,976,860	535,795	3,512,655	'19년 조정교부금 증가액 535,795 - '18회계연도 결산차액 402,691 - '19년도 미편성액 34,687 - 지방소비세 인상분 98,417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사업별설명서 1권, p.966)

- 동 사업은 ‘시민찾동이 활동’을 위한 활동물품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1,200만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4,351	212	4,563	-
사무관리비	1,361	212	1,573	○ 시민찾동이 활동 지원 212 - 424개동×250명×2,000원
연구용역비	200	0	200	
포상금	20	0	2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69	0	1,969	
자치단체자본보조	800	0	800	

- 동 추경안과 관련된 방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자치구로 재배정하여 배지, 열쇠고리, 냉장고 자석 등 시민찾동이 상징 표식을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제작·배부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 배지나 열쇠고리 등의 시민찾동이 상징 표식을 통해 소속감 등이 확보되도록 지원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을 변경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추경으로 편성 요청된 사무관리비는 배지나 열쇠고리 등 8개

종류의 시민찾동이 상징물품을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제작·배포할 계획으로 ①기존 주민참여 활동 중인 주민 뿐만 아니라 ②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가입한 일반 시민, ③특정 행사나 장소에서 대면 홍보로 가입한 시민까지 배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서울시의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에도 열거된 것과 같이 “찾동이(찾아가는 동네 이웃)”는 골목 단위의 복지문제, 생활불편, 공동체 활동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찾동이”를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는 것이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내용인지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따라서 추가 소요예산이 비록 소액에 해당하나 골목 단위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원조 찾동이’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가입한 이른바 ‘광의의 찾동이’에게 배부될 것까지 계상한 상징 물품 지원 예산에 대한 편성여부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8) 재 무 국

### □ 재정보전금 (사업별설명서 1권, p.975)

- 재무국 소관 **재정보전금**은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공동재산세)의 100%를 25개 자치구로 균분하는 것임

〈표 4-27〉 재정보전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정 예 산	증 감	추 경 예 산 (안)	산 출 내 역
자 치 구 기 타 재원조정비	1,243,665	87,983	1,331,648	공동재산세 정산분 87,983

- 금번 추경에서는 '18회계연도 결산결과 공동재산세 전출금 정산분 미지급분이 발생하여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를 879억 8,3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 시세 징수교부금 (사업별설명서 1권, p.979)

- 재무국 소관 **시세 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조례」에 따라 매월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납입한 시세에 대해 그 처리비를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납입액의 3%를 각 자치구에 지급하고 있음

- 금번 추경에서는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이 발생하여 **징수교부금**을 494억 4,9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9) 평생교육국

### □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985)

○ 동 사업은 초·중·고교 학교시설물의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낙후한 학교 시설물 개선 및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바,

-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하반기 추가 발생하는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26억원)보다 12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8〉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2,600	1,200	3,800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600	1,200	3,800	○ 하반기 긴급수요 대응 1,200 - 5,000만원×24개교

###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 지방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1권, p.993)
- 담배소비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1권, p.997)
- 지방교육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1권, p.1001)

- 동 사업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될 경우, 전출금을 편성하여 법정정산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세 전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통세 시세총액의 10%를 전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① 지난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취득세를 포함한 보통세 수입이 초과 수납됨에 따른 정산분 1,917억 5,200만원과 ② 「지방세법」 개정('18.12)에 의거한 지방소비세율 4%p 인상(11%→15%)으로 지방소비세 증가분 435억 4,700만원이 초과 발생하여 기정예산보다 18.6%, 2,352억 9,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임
- **담배소비세 전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45%를 전출하는 것인 바,
  - 지난 '18회계연도 결산결과 △74억 1,300만원의 정산금이 발생되어 교육청전출금 중 일부를 감액 조정하기 위해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교육세 전출**의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를 전출하는 것으로
  - 지난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방교육세 수입이 초과 수납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7%, 1,155억 6,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육

청으로 제출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9〉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기 정 예 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지 방 세 전 출	1,267,922	235,299	1,503,221	•'18년도 정산금 191,752
				•'19년도 지방소비세 인상분 43,547
담배소비세 전출	254,329	△7,413	246,916	•'18년도 정산금 △7,413
지방교육세 전출	1,492,338	115,562	1,607,900	•'18년도 정산금 115,562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1064)

○ 동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82억 3,800만원 증액된 1,661억 3,800 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초·중학생 등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임

- 서울시는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에 따라 '19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기존 공립초와 중학교에서 9개 자치구의 고교 3학년 96개교와 11개 자치구의 국·사립초 21개교까지 확대하여 기 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예산안 제출 이후 '18년 11월 21일,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 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19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25개 자치구 전 고교 3학년과 16개 자치구의 국립초 1개교, 사립초 35

개교, 국제중 1개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 예산안 심사과정중 추가로 증액하지 않고, '19년도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시행'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연간 학교급별 지원대상 전체 인원 수를 산출계수로 반영하고, 연간 급식일수 중 예산지원 (확보)일 수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한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①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학교급별 미반영 급식 일수에 대한 급식비 추가 소요액과 ②예산편성 및 교부 시점 차이로 인한 급식 인원 증감 변동액을 반영하여 182억 3,8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4-30〉 2019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산출계수 변동내역

(단위 : 교, 명, 일, 원)

구분 \ 학교급		공립초	국·사립초	중	국제중	고	합계
학 교 수		563	37	385	1	319	1,305
급 식 인 원	추경	409,992	19,996	208,997	495	83,673	723,153
	기정	(410,000)	(19,928)	(209,000)	(487)	(84,700)	(724,115)
급 식 일 수	추경	182	180	170	170	163	
	기정	(156)	(155)	(155)	(155)	(155)	
급 식 단 가		3,628	4,649	5,406	5,406	5,406	

※ 자료근거 : 「2019년도 예산서」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재구성

-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21년도까지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이 학교급식 지원대상으로 확대된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사립 초 및 국제중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에 유보적 입장을 밝힌 2개 자치

구 소재 5개교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고, 향후에도 사업대상에 포함될지 미확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학교급식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 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상 의무교육기관인 일부 초·중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고 있어 현실적인 제약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이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지원 기관간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0) 도시공간개선단

### □ 한강변 주요사업 연계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별설명서 2권, p.1270)

- 동 사업은 기정예산(2억 5,0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임

#### 〈표 4-31〉 한강변 주요사업 연계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조성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250	370	620	
사무관리비	2	49	51	○ 평가회, 회의 등 : 400만원 ○ 공모관리용역 : 4,500만원
기타보상금	19	20	40	○ 공모 당선 시상금 : 2,000만원
시설비	228	300	528	○ 보행네트워크 조성 <u>설계용역비</u> : 3억원

- 동 사업은 여의나루역~노들역까지 2.9km 구간에 총 39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시민여가 거점공간 8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19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 그러나 '19년 4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노들역~동작역까지 2.4km 구간을 추가한 5.3km 구간에 대해 ①소규모 시민여가 거점공간 12개소를 조성하고, ②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재구조화하고자 시설비 3억원이 포함된 3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후 설계용역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의 규칙에 따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정하여 설계비 등 투자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19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총사업비(39억 8,000만원)가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규모(조성구간 2.9km → 5.3km) 등이 확대되어 총사업비 또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
    - '19년 4월 수립된 변경방침에는 총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추경안의 사업별설명서에도 당해연도 사업비만 기재하고 있을 뿐,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동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 금번 추경을 통해 시설비를 3억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당초 총사업비(39억 8,000만원)에 시설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증가분) 3억원을 추가할 경우, 이미 총사업비는 4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됨
    - 실제 사업부서의 경우에도 동 사업의 공사비를 65억 3,800만원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비 3억원을 추경으로 편성 요청하기에 앞서 투자심사가 이행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이후 '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할 계획인 바 증액편성 요청된 시설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는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안으로 추경을 통한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별설명서는 예산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재정정보 등을 가감없이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 동 사업의 경우, ①사업별설명서에 총사업비조차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②금년 4월, 사업계획 변경시 이미 '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할 것으로 계획하였음에도 사업별설명서의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동 사업은 ③'19년 9월부터 '20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됨에도 사업별설명서의 “2019년도 추진일정”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3억원)를 금년도중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사업부서 등의 판단으로 특정내용을 은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일 수 있어 향후 예산심사를 위하여 제출되는 사업별설명서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1) 안전 총괄 실

### □ 도시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별설명서 2권, p.1318)

- 동 사업은 전산개발비 1억 7,000만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포함된 1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표 4-32〉 도시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계	-	180	180	
사무관리비	-	10	10	○ 성능개선위원회 운영 : 1,000만원
전산개발비	-	170	170	○ (열수송관)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 1억 7,000만원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동 사업은 추경안 제출시점('19. 5.23)까지 관련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동 편성요청 건은 17종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기 추진중인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및 실태평가 총괄 용역”(’18. 9~’19. 9)에 기반시설 1종(열수송관)을 추가하여 18종의 기반시설에 대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산개발비(1억 7,000만원)를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서,

- 사업부서로서는 당초 '18년도 본예산에 정보화사업비(8억 400만원)를 편성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17.11)한 바 있어 시스템 구축대상에 기반시설 1종(열수송관)을 추가하더라도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과는 별도로 「열수송관' 선제적 유지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에 해당됨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추경안 편성에 앞서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와 같이 전산개발비(1억 7,000만원) 추가편성을 위한 별도의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편성요청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19. 5.23)이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절차적 요건은 추경안 제출이후 이행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은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

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절차적 요건을 확인하는데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2) 도시재생실

###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2권, p.1493)

○ 동 사업은 금번 추경안을 통해 '손기정기념 프로젝트(41억원) 및 애니타운 재미로 사업비(8억원)를 편성하기 위해 시설비 43억원이 포함된 등 49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손기정기념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부서는 명시이월(43억 9,000만원)과 '19년도 본예산(2억 7,000만원) 및 추경안 편성요청액 (41억원)을 반영한 87억 6,000만원을 총사업비로 계획하여 '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4-33〉 손기정기념 프로젝트 사업 소요예산 및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역	소 요 예 산	설 계 완 료	공 사
소계	8,760		
① 체육센터 신축	2,683	'19. 4. 30	미정
② 전시관 리뉴얼	953	'19. 4. 30	미정
③ 도서관 조성	1,137	'19. 4. 30	미정
④ 공원리뉴얼	3,293	'19. 8.14.(예정)	미정
⑤ 기타 <sup>주1)</sup>	694	-	-

※주1)측량 등 조사비, 이설비, 감리비, 홍보비 등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4903 ('19. 5. 8) 재구성

- 그러나 동 사업 중 ①체육센터 신축 및 ②전시관 리뉴얼, ③도서관 조성의 경우, '19년 4월30일 설계가 완료된 후 현재까지 입찰공고조차 실시되지 않았으며, ④공원리뉴얼의 경우에는 설계용역도 완료되지 않아 향후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회계연도말까지 사업종료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추정안으로 41억원을 편성하더라도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대규모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기 보다는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실제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편성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애니타운 재미로 사업비의 경우에도, 설계용역과 공사를 위해 시설비 8억원을 증액요청하였으나 설계용역 기간이 5개월로서 추정안으로 8억원을 편성하더라도 계약심사,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회계연도 종료까지 설계용역(6,900만원)만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공사비 지출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기 보다는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실제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편성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지난 본예산 심사시 당초 편성요청된 예산액중 일부가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복원시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취지를 등한시한 결과일 수 있는 바, 동 사업내용이 당해연도 추경을 통해 증액편성을 요청할

만큼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사업별설명서 2권, p.1498)

○ 동 사업은 '19년 9월까지 총사업비 66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노들섬내 문화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시설비 51억 4,400만원이 포함된 55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4A〉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추경안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변경내용	예산액
		계	5,580
①관계법령 및 설계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30억 6,000만원)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비 40</li> <li>◦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82</li> <li>◦ 국가계약법 관련 증가(물가변동 등) 548</li> <li>◦ 본인증관련관련증가(녹색건축물, 소방 등) 80</li> <li>◦ 설계도서간 상이, 오류 23</li> <li>◦ 현장여건(지장물이설비)반영및기능개선(난간높이변경 등) 296</li> <li>◦ 관급자재비(설계서 누락, 관급자재 단가 상승, 물량 증가 등) 167</li> </ul>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증관련관련증가(녹색건축물, 소방 등) 38</li> <li>◦ 설계도서간 상이, 오류 69</li> <li>◦ 현장여건(배수시설 설치) 및 기능개선(목재 오일스테인 도장 등) 반영 348</li> </ul>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대체시설 조성 공사비 117</li> <li>◦ 외부 옹벽난간 변경 198</li> <li>◦ 공용건축물 협의에 따른 사항 반영 236</li> </ul>	
	전기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조명 추가분 246</li> <li>◦ 외부광장구간 CCTV 추가 설치 등 271</li> <li>◦ 공용건축물 협의에 따른 사항 반영(버스안내관 설치 등) 200</li> </ul>	
	②기타 추가사업비 변경 (15억 7,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들섬 접근성 개선용역 설계변경 20</li> <li>◦ 맹꽂이 모니터링 용역비 80</li> <li>◦ 백년다리(한강대교 보행교) 조성사업 용역비 253</li> <li>◦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 10</li> <li>◦ 노들섬 옹벽 벽면 조치 210</li> <li>◦ 노들섬 옹벽 하단부 나무식재 및 크랙가든 추가시공 1,000</li> </ul>	



〈표 4-34B〉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추경안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변경내용	산출비용
③운영자 및 설계자 제안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8억 9,900만원)	◦ 중정부위 조정 보강	80
	◦ 설계서 누락에 따른 추가 공사비(청소원 샤워실·휴게실 등 )	366
	◦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공용공간 집기류(방재실, 경비실, 수유실, 안전관리, 야외공간, 화장실 등)	390
	◦ 다목적시설 동측 외벽재료 변경(시멘트패널→U형글라스)	62
④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감리비 증가 (4,600만원)	◦ 동측부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	4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5292 ('19. 5.17)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변경 추진계획”

- 사업부서는 노들섬 서측부분과 동측부분을 분리하여 서측부분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동측부분은 다목적시설을 설치하되 수방사 검문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번 추경을 통해 당초 계획에서 일부 수정된 설계변경, 군부대 별도 건물 신축 등의 사유로 발생된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을 증액편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나, '19년 6월 5일 현재, '19년도 예산현액 344억 8,000만원중 25.0%, 86억 5,4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예산집행현황을 추정하면 추경예산안으로 과도한 규모의 시설비가 증액편성되는 것일 수도 있어 회계연도말까지 실제 집행가능성을 판단하여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5〉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sup>주2)</sup>	추경(안)
	본예산	전년도이월액	집행률 <sup>주1)</sup>				
계	34,480	21,205	13,275	8,656	25.1	25,823	5,580
사무관리비	20	20	-	11	55.0	9	-
민간위탁금	2,579	2,579	-	323	12.5	2,255	-
시설비	30,574	18,000	12,574	7,889	28.8	22,685	5,144
감리비	1,252	556	696	428	34.2	823	46
시설부대비	55	50	5	5	9.0	50	390

※ 주1) 예산현액기준 집행률

주2) '19. 6. 5 현재

자료근거 :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

□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 (사업별설명서 2권, p.1532)

- 동 사업은 기정예산(10억원)보다 30억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서, ①시민광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14억원과 ②지하공간 조성 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14억원, ③감리비 2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6〉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000	3,000	4,000	
시설비	1,000	2,800	3,800	○ 설계비 : 28억원 - <u>시민광장 기본·실시설계비</u> : 14억원 - 지하공간 조성 설계비 : 14억원
감리비	-	200	200	○ <u>감리비</u> : 2억원

○ 동 사업은 '19년도 본예산 심사시 당초 편성요청된 예산액(26억원) 중 시민광장 조성 설계비 14억원과 감리비 2억원이 전액 삭감된 바,

- 금번 추경안의 경우, 본예산 심사시 의회가 삭감한 시민광장 기본·실시설계비(14억원)와 감리비(2억원)를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의회의 본예산 심사결과 삭감된 경비에 대해 추경을 통해 복원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까지도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의회가 삭감한 경비(△16억원)를 추경을 통해 복원할 만큼 긴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사안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본예산 심사시 의회가 시민광장 기본 및 실시 설계비(14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다른 세부사업(이른바 ‘역사광장’ 사업)에 편성된 설계비로 시민광장 설계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19. 3)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예산이 수반되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였다면 삭감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유관 사업에 편성된 설계비로 사업이 우회적으로 추진된 사실이 있어 시민광장 기본·실시설계비(14억원)의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3) 푸른 도시국

####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 (사업별설명서 2권, p.1622)

- 동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2억 7,1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공 기 관 등에 대한 경 상 적 위탁사업비	0	4,271	4,271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			4,271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부터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상업무가 증대되고 있어 전문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소요예산의 편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개별 조례에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업은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위탁사업비가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자

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민간위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추경안에 편성요청된 세출과목으로 편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난 '17년 1월, 서울시는 투자·출자·출연기관의 대행사무가 통일적인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산하기관 대행사무 관리계획」 과 함께 「투자출연기관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을 첨부하여 개별 조례에 대한 개정을 협조요청 한 사실이 있는 바,

- 당시 첨부 내용을 검토하면, ①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②시의 회 의결 등 외부 통제장치 신설, ③경상적 사업비에 대한 비용심사로 대행사무 재정 건전성 강화, ④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관련 테스트 지표 활용을 통한 대행 적정성 판단 기준 보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 한 것은 물론 '17년 4월까지 당시 5개 투자기관과 1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조례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설공단인 경우, 지난 '17년도 이전부터 ①대행사무를 신규·해 지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②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는 등 대행사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나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17년 1월, 개별 조례에 대한 개정을 협조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년 10월 이후 관련 조항을 개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동 추경요청 건의 경우, 서울시의 투자·출자·출연기관과 위탁계약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업무대행에 따른 외부 통제장치, 대행사무 추진의 적정성, 수행기관의 타당성 등을 검증할 보완장치가 개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일몰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의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이 필요한 사안이나 편성요청된 예산의 승인여부와 함께 업무대행에 따른 외부 통제장치 등의 유무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4) 교통 방송

### □ 기타보상금의 편의적 편성 지양필요

- FM 방송제작·운영 (사업별설명서, p.1895)
- eFM 방송제작·운영 (사업별설명서, p.1899)

○ 교통방송 소관 2개 사업은 소요예산중 기타보상금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FM 방송제작·운영과 eFM 방송제작·운영의 경우, 프리랜서의 기간제 근로자 전환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프리랜서 작가에 대해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타보상금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8〉 교통방송 소관 기타보상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산출내역
FM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3,542	160	3,703	○ 프리랜서(작가)에 대한 원고료 지급 114,000원×4시간×353일 = 160,968천원
eFM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176	245	2,422	○ 프리랜서(작가)에 대한 원고료 부족분 확보 84,000원×8시간×365일 = 245,280천원

※ 주1) FM 방송제작·운영의 경우, 365일중 12일은 특별방송이 편성되어 있어 산출내역의 근무일수 산정기준일수가 353일이며 eFM 방송제작·운영의 경우에는 특별방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정적으로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세출과목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부서 입장에서 기타보상금 지급근거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부 제작인력에 대해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기타보상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회신 하였으며 지난 '17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19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기타보상금 편성에 대한 부적절성이 제기된 바 있음
- 지난 제284회 정례회중 '19년도 본예산 심사시 교통방송은 “단속적인 노동을 하는 외부제작 인력들에 대해 기타보상금으로 처리해 왔다”고 답변하였으며, 작가 등 프리랜서는 서울시와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노동의 대가를 인건비가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프리랜서 작가의 근무형태에 대해 교통방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5월 22일 현재까지 총 142일 동안 **FM 방송제작·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총 50명의 인원이 프리랜서 작가 등으로 근무하였고, 이중 25명은 142일 전일을 하루도 빠짐 없이 근무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 뿐만 아니라 **eFM 방송제작·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19년 1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31명의 프리랜서 작가중 15명은 근무일수

142일을 전일을 근무한 것으로 제출한 바

- 근무일수중 하루도 빠짐없이 사실상 상시근로하는 형태임에도 ‘단속적 근무형태’로서 노동의 대가를 인건비가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실제 근무형태와 상이한 결과로 사료됨
- 따라서 사업부서와 해석 및 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무일수 전일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인건비성 경비가 아닌 반대급부적 경비에 해당하는 기타보상금을 편성하는 것은 통상의 노무와 근로형태에 대한 적절한 편성사례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

#### 1)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 개요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금번 추경안을 통해 수입·지출예산에 315억 4,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세입예산중 수입과목 경정을 위해 사업수익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5억 9,2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수입중 기타비유동부채수입을 5억 9,200만원 감액요청한 것임
  
- 기정예산의 경우, (1) 수익적수입 및 지출중 ①사업수익 7,973억 2,100만원, ②사업비용 4,615억 8,600만원으로 계획하고, (2) 자본적수입 및 지출중 ①자본적수입 2,144억 6,200만원, ②자본적지출 5,501억 9,7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 추경안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전입금(5억 9,2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315억 4,000만원)을 수입지출에 반영하여 (1) 수익적수입 및 지출중 ①사업수익 7,979억 1,400만원, ②사업비용 5,000억 800만원으로 계획하고, (2) 자본적수입 및 지출중 ①자본적수입 2,454억 1,000만원, ②자본적지출 5,433억 1,6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15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경우에도 기정예산과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아울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총칙 제14조를 통해 회계연도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금, 기타보조금 등을 간주처리 하도록 하고 있음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기정예산 1조 117억 8,400만원보다 315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된 1조 433억 2,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예비비**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1)사업예산은 기정예산(12억 7,100만원)보다 58억 7,300만원 증액된 71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 (2)자본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2) 하수관로 등에 대한 추경안 편성

-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내경 900mm 미만 하수관로’에 대해 시장 제출안 외 예산편성을 제한하였으나,
- '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년도 본예산의 편성사례처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하수도 요금인상 및 자치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내경 900mm 미만 하수관로’가 포함된 자치구 시설을 정비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9〉 추경안중 내경 900mm미만 하수관로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mm)

사 업 명	추경요청액	관 리 주 체	공 사 주 체	내 경
마 장 초 등 학 교 주 변 하 수 관 망 개 선	1,300	자치구	자치구	300
돌곶이로 22길 34-12 외 2개소 하 수 관 로 이 설	70	자치구	자치구	450
온곡중학교~온수골사거리간 하 수 관 로 개 량	200	자치구	자치구	300~600
퇴 계 로 8 7 길 일 대 하 수 관 로 개 량	280	자치구	자치구	450
한 남 대 로 4 6 길 1 6 ~ 3 8 하 수 관 로 이 설	200	자치구	자치구	450
마 장 축 산 물 시 장 노 후 , 불 량 하 수 관 로 정 비	770	자치구	자치구	450
왕십리로 24길 17-1일대 하 수 관 로 개 량	500	자치구	자치구	300~600
왕 산 로 2 8 3 주 변 노 후 하 수 관 로 정 비	250	자치구	자치구	900
노해로 70길 주변 오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10	자치구	자치구	350~700
한글비석로 24길 일대 하 수 관 로 정 비	450	자치구	자치구	300~600
새터산 4길 46 하수관로 이설	100	자치구	자치구	300~900
영 등 포 로 3 2 7 주 변 외 1 개 소 하 수 관 로 개 량	160	자치구	자치구	450
상도터널 상부 하수관로 정비	630	자치구	자치구	600
응암동 일대 하수관로 성능 향상 사업	600	자치구	자치구	600~1,200
초 록 마 을 로 6 2 주 변 하 수 관 로 개 량	420	자치구	자치구	800~1,500
남 부 순 환 로 7 길 4 9 외 1 개 소 하 수 관 로 개 량	450	자치구	자치구	450~800
신 사 동 고 개 주 변 원 형 관 로 보 수	500	자치구	자치구	450~1,000
서 신 초 등 학 교 주 변 원 형 관 로 보 소	300	자치구	자치구	450~6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7190 ('19. 5.21)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추경안 편성

#### □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220)

○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226억 9,100만원)보다 시설비 3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증액편성 요청된 시설비의 경우, ①비난연성 노후 케이블 교체(8억원), ②LED조명 교체(5억원), ③CCTV, 보안장비 설치(4억 8,000만원), ④전동벨브 원격제어시스템 구축(9억 6,000만원), ⑤관목 식재사업(4억원)을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한 것인 바,

- ①비난연성 노후 케이블 교체(8억원)사업은 설계용역 2개월, 전기공사 7개월로 계획하고 있으나 추경안 승인이후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연도말까지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